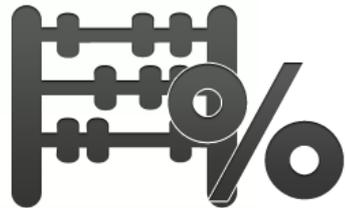


사용설명서

(전자신고서비스 이지세무)

“클릭 한 번으로 신고 끝!”

아이퀘스트는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와 연동,
누구든지 쉽고, 간편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사말

■ 인사말

**아이퀘스트는 1996년 설립 이래,
중소기업을 위한 IT솔루션 얼마에요를 출시, 보급에 매진하였으며,
고객만족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94년 <아이피>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첫 번째 경리 프로그램인 <나도 회계사> 출시 이후, 1996년 (주)아이퀘스트로 상호를 변경하여 회계/경리프로그램의 베스트셀러인 얼마에요를 출시, 현재 국내 15만 기업이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이퀘스트(IQuest)는 '정보(Information)'와 '구합니다(Quest)'를 합성한 말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구합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나(I)는 탐구합니다 (Quest)'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리, 회계, 판매, 재고, 인사, 급여, 무역 분야에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이퀘스트의 바람이자 목표입니다.

우리는 경험과 정신을 프로그램에 담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아이퀘스트는 언제나 고객을 위한 차별화 된 서비스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고객의 요구에 만족을 드리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경영, 관리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원천세신고

■ 원천세 요약 정보

• 원천징수 제도란?

- 근로자 등 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등이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법정/신고납부기한 및 대상소득

원천징수 구분	법정기한	소득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한	제출대상 서류
일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 일까지	매월인 경우 익월 10 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반기납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6 월, 7~12 월)의 익월 10 일까지	1~6 월인 경우 7/10 일까지	
		7~12 월인 경우 1/10 일까지	

구분	대표 소득
근로소득(일반)	급여, 상여금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자 일당
퇴직소득	퇴직금

구분	대표소득
기타소득	원고료 등
사업소득	학원강사의 강사료 등

• 원천징수대상 및 제외대상

- 원천징수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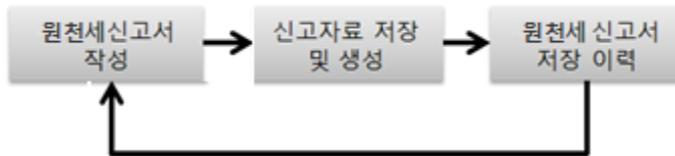
적용대상		대상 소득	납부 세목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해당 소득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 배당,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용료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법인세법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법인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 (이자, 배당,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원천징수 제외대상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일 경우
- 과세 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인 경우
- 접대부/댄서 등이 지급받은 사업소득인 경우
- 원천징수 배제의 경우
- 소액부 징수의 경우

• 이지세무 원천세 신고서 메뉴구조

1. 원천세 신고서 작성: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을 나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자료 저장 및 생성: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는 전산매체를 생성합니다. **(전자신고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3. 원천세 신고서 저장 이력: 이전 신고했던 신고서 이력을 볼 수 있고, 신고서를 선택하여 수정작성도 가능합니다.



■ 원천세 신고서 작성

• 기본사항 작성요령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input type="text" value="고객센터"/>	대표자명	<input type="text" value="관리자"/>	일괄납부 여부	<input type="radio"/> 여 <input checked="" type="radio"/>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input type="text" value="999-11-05007"/>	사업장소재지	<input type="text"/>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input type="radio"/> 여 <input checked="" type="radio"/> 부
					전화번호	<input type="text"/>
					전자우편주소	<input type="text"/>
<input checked="" type="radio"/> 매월신고 <input type="radio"/> 반기신고 <input type="checkbox"/> 수정 <input type="checkbox"/> 연말 <input type="checkbox"/> 소득처분 <input type="checkbox"/> 환급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귀속연월 2012년 10월 <input type="button" value="저장"/> 지급연월 2012년 10월 <input type="button" value="인쇄"/>		

원천세 신고서 작성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로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입력 칸을 클릭하면 신고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신고 사업자 정보 수정창이 생기며, 해당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신고 사업자정보 수정

납세자구분	<input type="radio"/> 법인사업자 <input checked="" type="radio"/> 개인사업자		
원천세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매월신고 <input type="radio"/> 반기신고		
신고사업자번호	999-11-05007 ※ 회원님의 사업자 번호입니다.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상호(법인)명	아이퀘스트	대표자명	얼마에요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작성일자	
부표작성여부	<input type="checkbox"/> 부표 <input type="checkbox"/> 승계명세		
세무대리인 성명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세무대리인 전화번호		세무대리인 사업자번호	
홈택스ID		관할세무서	
환급은행		계좌번호	

적용 > 취소 >

- **납세자구분:** 사업자 번호에 다른 납세자 구분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 **원천세 신고구분:**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알맞게 선택합니다.
- **신고사업자번호:** IQUEST 홈페이지 가입 시 등록한 사업자번호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변경 불가)
- **상호(법인)명:** IQUEST 홈페이지 가입 시 등록한 상호명을 자동으로 불러오며, 사용자가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 **대표자명:** IQUEST 홈페이지 가입 시 등록한 대표자명을 자동으로 불러오며, 사용자가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주소:** 회사 주소를 입력합니다
- **전화번호:** 회사의 대표번호를 입력합니다.

- **작성일자:** 원천세 신고서의 작성일자를 입력합니다.
- **부표작성여부:** 원천세 신고서의 부표 및 승계명세를 작성한 경우 체크합니다.
- **세무대리인 성명:** 세무대리인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세무대리인의 관리번호를 입력합니다.
- **세무대리인 전화번호:** 세무대리인의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 **세무대리인 사업자번호:** 세무대리인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 **홈텍스ID:** 전자신고 시 필요한 홈텍스 ID를 입력합니다.
- **관할세무서:** 관할세무서를 선택합니다.
- **환급은행:** 부가세 전자신고를 하여 환급금이 있을 때 환급 받을 은행을 선택합니다.
- **계좌번호:** 환급은행의 계좌를 입력합니다.

수정한 신고사업자정보는 [적용] 버튼으로 입력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을 수정하고 싶지 않다면 [취소]버튼으로 신고사업자정보 수정창을 종료합니다. 입력(수정)한 정보는 원천세신고서의 원천징수의무자 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고구분:**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 수정신고서에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시에는 “소득처분에 알맞게 선택합니다.
(지점법인/국가기관 및 개인은 “소득처분” 선택할 수 없음)
매월분(반기별) 신고서에 계속 근무자의 연말 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반기)” 및 “연말”란 두 항목을 선택하고,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신청하려는 경우 “환급신청”을 선택합니다.

신고 형태		신고구분 (해당항목 v)	
정기 신고	월별	평월	매월신고
		연말정산월	매월신고, 연말
		연말정산월 환급신청	매월신고, 연말, 환급신청
	반기별	상반기	반기신고, 연말
		하반기	반기신고
		상반기 환급신청	반기신고, 연말, 환급신청
수정 신고	월별	평월	매월신고, 수정
		연말정산월	매월신고, 연말, 수정
	반기별	상반기	반기신고, 연말, 수정
		하반기	반기신고, 수정
소득 처분	월별	평월	매월신고, 소득처분
		연말정산월	매월신고, 연말, 소득처분
	반기별	평월	반기신고, 소득처분
		연말정산월	반기신고, 연말, 소득처분

※ 위의 표는 신고 형태별 기재방법 입니다.

- **귀속연월**: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소득발생 연월을 기재합니다. 소득처분의 경우 귀속연월은 대상 소득의 당초 귀속연월을 기재합니다.

(ex. 반기별납부자의 경우 해당 반기 개시월 (oooo년 1월, oooo년 7월)을 기재합니다. 2011년 연말정산의 귀속연월은 2012년 2월로 기재하지만,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는 귀속연월을 2012년 1월로 기재합니다.)

- **지급연월:**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한 연월을 기재합니다. 급여 등을 미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월을 기재합니다.

(ex. 반기별납부자의 경우 해당 반기종료 월(0000년 6월, 0000년 12월)을 기재하고,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연월을 0000년 2월로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내역 및 납부세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고객센터	대표자명	관리자	일괄납부 여부	<input type="radio"/> 여 <input checked="" type="radio"/> 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input type="radio"/> 여 <input checked="" type="radio"/> 부				
	사업자(주인) 등록번호	999-11-05007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input checked="" type="radio"/> 매월신고 <input type="radio"/> 반기신고 <input type="checkbox"/> 수정 <input type="checkbox"/> 연말 <input type="checkbox"/> 소득처분 <input type="checkbox"/> 환급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귀속연월	2012년	10월	저장		
					지급연월	2012년	10월	인쇄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 원)										
소득자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⑤당월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징수세액				⑩소득세등 (가산세포함)	⑪농어촌 특별세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등	⑦농어촌 특별세	⑧가산세			
개인 (거주자·비거주자) 연간소득	간접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정산	A04							
		가감계	A10							
	사업소득	퇴직소득	A20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A40							
		연간소득	매월징수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해지추징세액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 (세액)	A90								
		총합계	A99							
② 환급세액 조정 (단위 :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⑥조정대상 환급세액 (③+④-⑤+⑥)	⑦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⑧차월 이월 환급세액 (②-③)	(21)환급 신청액
① 전월 미환급 세액	② 기환급 신청 세액	④ 차감잔액 (①-②)	③ 원납 환급	⑤ 신탁재산 (금융회사등)	⑥ 그밖의 환급세액 금융회사 등 합병등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납부(환급) 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작성합니다.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의 종류를 모두 입력합니다.

1.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소득구분에 따른 원천징수 명세를 작성합니다.

- **소득지급:** 항목에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 인원, 총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주(현), 종(전) 근무지 등으로 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원천 징수하는 경우에는 총 인원 및 지급액의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 **징수세액:**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입력하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A99)란에 자동으로 기입되고, 환급 할 세액은 해당 입력란에 “△”표시하여 입력한 후 그 합계액은 하단 환급세액 조정의 ⑮일반 환급 란에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 “△”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란(A99)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중도퇴사(A02), 연말정산(A04), 연말정산(A26), 연말정산(A46), 수정신고(A90) 항목만 해당합니다.

※ ⑧가산세 항목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기입하는 것으로 농어촌 특별세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연금소득의 경우 납부 할 세액 또는 환급 할 세액의 계산은 가감계(A10, A30, A47)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징수세액(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항목에 납부 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소득세등, ⑪농어촌특별세) 항목에 자동으로 기입되고, 환급 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합계를 하단 일반환급(15)에 자동으로 나타냅니다.

- **납부세액:** 징수세액에서 당월조정환급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재하며, 자진 납부서상 납부세액과 금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당월조정환급세액:** 당월 징수한 세액과 상계처리 할 “△”세액을 기재하는 것으로, 조정대상환급세액(18) 범위 내에서 기재합니다.

•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비독립적 인적 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소득을 말하며, 급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급여, 봉급, 급료, 세비, 상여금 등이 해당됩니다.

- 간이세액(A01): 매월 급여 지급액 및 원천 징수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 중도퇴사(A02): 연도 중 중도퇴사자가 있는 경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기재합니다.
- 일용근로(A03):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일당 및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합니다.
- 연말정산(A04): 계속 근로자에 대한 연말 정산한 내역을 기재합니다.
- 가감계(A10): 근로소득 항목의 가감계를 기재하는 란으로 징수세액 항목의 금액이 “△”인 경우 하단의 당월 발생 환급세액(15.일반환급) 항목에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또한 입력된 당월 조정 환급세액은 하단의 당월 조정 환급세액 계(19)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 **퇴직소득(A20):**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각종 공무원 및 사립 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단체 퇴직보험)의 보험금,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 발환금 등이 해당됩니다.

• **사업소득(A25~26):**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보험모집인 등이 이에 해당함)

• **기타소득(A40):** 기타소득은 신고서 상 소득 외의 소득으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 이에 준하는 금품을 받거나 복권, 경품권 등의 추첨권에 의하여 받은 금품 등이 해당합니다.

- 원천징수세율: 기타소득 금액에 20/10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단, 복권 등과 같은 당첨금 등은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 30/100을 적용합니다.

- **연금소득(A45~46):** 2001.01.11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연금 저축부터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됨에 따라 연금보험료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합니다.
- **이자소득(A50):**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소득이 해당합니다. 작성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 **배당소득(A60):**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해당합니다. 작성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내/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등...
- **저축해지추징세액등(A69):** 연금저축, 청약저축, 장기 주식형저축 등 해지 시 해당되며, 작성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비거주자 양도소득(A70):**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하며,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내/외국법인원천(A80):** 당월 법인에게 지급한 법인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합니다. 작성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정신고(세액)(A90):** 당초 신고분 자체의 오류분에 대해서만 수정신고 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귀속 연월을 정확히 적어 정

상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여 발생한 세액은 정기신고서(수정신고서 아님)의 수정신고세액(A90)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총합계(A99):** 근로소득가감계(A10), 퇴직소득(A20), 사업소득가감계(A30), 기타소득(A40), 연금소득 가감계(A47),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및 수정신고(세액)(A90)의 합계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TIP

총 합계란 자동 기입방법!!

: 원천징수명세의 소득지급(④,⑤), ⑨당월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⑩,⑪)칸은 단순 합계액이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원천징수명세의 징수세액(⑥,⑦,⑧)은 모든 구분의 합계액 중 (+)금액의 합계액만 기재되며, (-)금액의 합계액은 [⑫일반환급] 란에 기재됩니다.

- 모든 합계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기입되며, 직접 입력/수정이 불가합니다.

2. 환급세액 조정

- **전월미환급세액:** 직접 월의 차월이월 환급 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작성합니다.
- **기환급신청 세액:**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환급이 발생한 경우 다음달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 징수 할 세액이 없거나 원천 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여 세무서에 직접 환급 신청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차감잔액:** 전월 미환급 세액 중 기환급 신청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전월에서 당월로 실제 이월된 금액이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직접 입력/수정 불가)
- **일반환급:** [근로소득가감계(A10)], [퇴직소득(A20)], [사업소득가감계(A30)], [기타소득(A40)], [연금소득가감계(A47)],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저축해지추징세액(A69)],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수정신고(세액)(A90)]란의[징수세액(⑥,⑦,⑧)]칸의 "△"금액(마이너스(-)금액)의 합계액이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직접 입력/수정 불가)
- **신탁재산(금융회사등):**
- **그밖의 환급세액:**
-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차감잔액과 당월 발생 환급세액(15,16,17)을 합한 금액이 자동으로 기재되며, 당월 조정환급 할 세액의 한도액이 됩니다. (직접 입력/수정 불가)
-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⑨당월조정환급세액]항목의 총합계(A99) 금액이 기재되는 란으로 조정대상환급세액(18)의 범위 내 금액인지 여부와 이월환급세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합니다. (직접 입력/수정 불가)
- **차월이월 환급세액:** 조정대상환급세액(18)에서 당월조정환급세액계(19)를 차감한 금액이 자동으로 기재되며 직접 입력/수정이 불가합니다.
해당 금액은 다음 달 신고서의 ⑫전월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합니다.
- **환급 신청액:** ⑲차월이월 환급세액 중 환급 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아래의 부표 및 명세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 원천징수 이행상황 부표

매월 원천징수 시 이자, 배당, 해지추징세액, 연금저축해지가산세, 비거주자의 사업 및 기타소득, 법인세원천분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input checked="" type="radio"/> 매월신고 <input type="radio"/> 반기신고 <input type="checkbox"/> 수정 <input type="checkbox"/> 연말 <input type="checkbox"/> 소득처분 <input type="checkbox"/> 환급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연월 2012년 1월 <input type="button" value="저장"/>		지급연월 2012년 1월 <input type="button" value="인쇄"/>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단위: 원)													
소득종류	귀속연월	지급연월	코드	인원	소득지급액	①결정세액	기납부원천징수세액			③차감세액	④조정환급세액	⑤환급신청액	
							②계	기납부세액 [주(현)]	기납부세액 [종(전)]				
합계													
<input type="button" value="리인수기"/> <input type="button" value="리인삭제"/>													
선택 ▼			선택 ▼										
선택 ▼			선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환급 신청란에 환급 신청액을 적어 환급 신청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 **소득종류:** 환급대상 원천징수 세목의 소득을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귀속연월/지급연월:** 환급세액이 발생한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을 입력합니다.
- **코드:** 선택한 소득에 따라 해당코드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인원:**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자의 인원을 입력합니다.
- **소득지급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⑤총지급액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입력합니다.
- **결정세액/기납부원천징수세액:**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기납부세액[주(현), 종(전)]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차감세액:**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하도록 입력합니다.
- **조정환급세액:** 환급 할 세액에서 차감한 같은 세목의 납부 할 세액을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 **환급신청액:** ③차감세액에서 ④조정환급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환급 신청액란과 금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㉔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 “전월미환급세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납부세액 명세서

기납부세액 명세서										
<input checked="" type="radio"/> 매월신고 <input type="radio"/> 반기신고 <input type="checkbox"/> 수정 <input type="checkbox"/> 연말 <input type="checkbox"/> 소득처분 <input type="checkbox"/> 환급신청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귀속연월 2012년 1월 <input type="button" value="저장"/> 지급연월 2012년 1월 <input type="button" value="인쇄"/>				
기납부세액 명세서 (단위: 원)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소득 종류	귀속 연월	지급 연월	코드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①소득세 등	②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합계										
<input type="button" value="리인추가"/> <input type="button" value="리인삭제"/>										
선택			선택							
선택			선택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소득의 구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결정세액				계	
			③소득세 등	④농어촌 특별세	종(전) 근무지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세등	농어촌 특별세	소득세등	농어촌 특별세
합계										
<input type="button" value="리인추가"/> <input type="button" value="리인삭제"/>										
선택										
선택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										
소득세등			농어촌특별세			사유				
①소득세등합계	③소득세등합계	차이금액 (③-①)	②농어촌 특별세합계	④농어촌 특별세합계	차이금액 (④-②)	<input type="checkbox"/> 종도회사	<input type="checkbox"/> 전입자			
						<input type="checkbox"/> 합병분할	<input type="checkbox"/> 전출자			
사유내용(기타선택 시 필수)						<input type="text"/>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을 기재합니다.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과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을 비교하여 작성하여 차이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①소득세 등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 주(현)근무지 - ③소득세 등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②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 주(현)근무지 - ④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1.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 - ①소득세 등, ②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 주(현)근무지 - ③소득세 등, ④농어촌특별세]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input checked="" type="radio"/> 매월신고 <input type="radio"/> 반기신고 <input type="checkbox"/> 수정 <input type="checkbox"/> 연말 <input type="checkbox"/> 소득처분 <input type="checkbox"/> 환급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귀속연월 2012년 1월	<input type="button" value="저장"/>	지급연월 2012년 1월	<input type="button" value="인쇄"/>	
(단위: 원)								
1.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내역 <input type="button" value="리언추가"/> <input type="button" value="리언삭제"/> 								
귀속연월	지급연월	신고구분	세목및코드	①발생환급세액	②같은세목의 납부할세액	③당월발생환급 세액(①-②)		
		선택	선택					
		선택	선택					
2. 환급세액 조정 현황 <input type="button" value="리언추가"/> <input type="button" value="리언삭제"/> 								
귀속연월	지급연월	전월미환급세액			⑦당월발생 환급세액	⑧조정대상 환급세액	⑨당월조정 환급세액	⑩차월이월 환급세액
		④전월 미환급세액	⑤기환 급세액	⑥차감 세액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는 환급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내역:**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⑩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의 최초 발생 시의 내역을 기재합니다. 신고구분란은 해당 전월미환급세액의 발생 사유를 선택합니다.
- 환급세액 조정 현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2.환급세액 조정]란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⑦당월발생환급세액은 [1.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내역 - ③당월발생환급세액]을 기재합니다.

- ⑩차월이월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⑫환급세액 조정]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합병 및 과세전환승계명세

합병 및 과세전환승계명세						
<input checked="" type="radio"/> 매월신고 <input type="radio"/> 반기신고 <input type="checkbox"/> 수정 <input type="checkbox"/> 연말 <input type="checkbox"/> 소액처분 <input type="checkbox"/> 환급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귀속연월 2012년 1월	<input type="button" value="저장"/>	
				지급연월 2012년 1월	<input type="button" value="인쇄"/>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 (단위: 원)						
승계대상사업자		차월이월환급세액승계근거		승계대상 차월이월환급세액 내역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일자	근거	귀속연월	지급연월	차월이월환급세액
합계						
				<input type="button" value="리언추가"/> <input type="button" value="리언삭제"/>		
			합병			
			합병			

합병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으로 인해 피합병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차월 이월환급세액을 합병법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본점(또는 주사무소)등이 승계하는 경우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명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승계대상사업자:** 승계대상인 피합병법인 및 지점법인의 사업자번호, 상호를 입력합니다.
- **차월이월환급세액승계근거:**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가 발생한 일자와 근거(코드)를 선택합니다.
- **승계대상 차월이월환급세액 내역:** 승계 할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기재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귀속연월", "지급연월", "(20)차월이월환급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환급세액 승계명세를 착오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과소납부 등으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정신고서

• 수정신고서란?

-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 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한 후 오류 등이 확인되어 당초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바로잡고자 하는 경우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초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에 대해서만 수정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구분에 "수정"으로 체크합니다.
- 당월분 신고서와 별지로 작성/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수정신고서는 당초 신고한 신고서 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임의로 수개월의 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1장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수정 전의 모든 내역은 상단에 빨간색으로, 수정 후 모든 내역은 하단에 검정색으로 기재합니다.
-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수정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달에 함께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기재하여 납부·환급세액을 조정하고, 수정 신고서의 [A90]란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현재 이지세무 화면상 재현되지 않아 화면은 추후
첨부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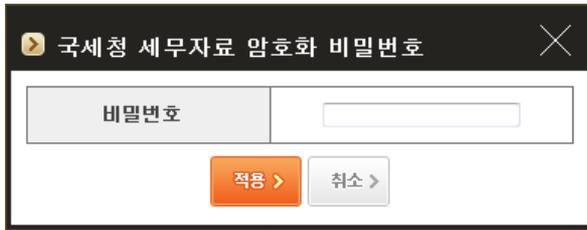
■ 신고자료 저장 및 생성

작성한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자료를 국세청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자료를 생성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자료명은 "enc_~.201" 형태로 저장됩니다.

- ① 작성한 원천세 신고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고자료 저장 및 생성			
<input checked="" type="radio"/> 매월신고 <input type="radio"/> 반기신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정 <input type="checkbox"/> 연말 <input type="checkbox"/> 소득처분 <input type="checkbox"/> 환급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귀속연월 2012년 10월 지급연월 2012년 10월
납세자	고객센터	신고구분	매월신고
구분	집계금액		
인원	56		
총지급액	297,000,000		
소득세등	0		
농어촌특별세	350,000		
가산세	0		
당월조정 환급세액	350,000		
납부소득세등(가산세 포함)	0		
납부농어촌특별세	0		
차월이월환급세액	426,000		
환급신청액	0		
※ 신고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 한 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input type="button" value="전자신고 파일 생성 >"/>

- ② 신고내용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하단 우측에 있는 [전자신고 파일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③ 국세청 전자신고 자료로 변환과 동시에 저장합니다. 국세청 세무자료로 전자신고 시 필요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국세청 세무자료 암호화 비밀번호

비밀번호

적용 > 취소 >

※ 비밀번호는 신고자료를 전자신고 시 꼭 필요하므로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 ④ 입력한 신고내용이 맞다면 신고자료를 생성하여 원천세 전자신고를 합니다.

조회된 원천세 신고서를 소득 별 납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단순 저장 하였을 때는 상태가 "임시"로 저장되고, 마감처리 시 상태는 "마감"으로 저장됩니다. 단순 저장한 임시상태의 원천세 신고서는 전자신고를 위해 마감처리를 해야 합니다.

저장된 원천세 신고서는 상세 "보기" 버튼을 통해 해당 원천세 신고서 수정이 가능하며, 이미 국세청자료를 생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 및 수정 할 자료가 있다면 신고서 수정은 가능합니다. 수정 후에는 해당 자료를 전자매체로 변환하여 최종 파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